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는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선택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 기준일 | 2009년 04월 10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년 04월 29일 |
|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 10조원
[모집(매출) 총액]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 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3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4
1. 명 칭.....	4
2. 모집(판매) 예정기간.....	4
3. 모집(판매) 예정금액.....	4
4. 펀드 존 속 기간.....	4
5. 분 류.....	4
6. 집합투자업자.....	4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5
1. 주요 투자대상.....	5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5
3. 수익구조	7
4. 주요 투자위험.....	7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8
6. 운용전문인력	9
7. 투자실적 추이.....	9
I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0
1. 수수료 및 보수.....	10
2. 과세.....	12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2
IV 요약 재무정보	13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7603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A:76033, 종류C:76034, 종류C-2:93509, 종류C-e:76035, 종류 직판F:84147)		
2. 모집(판매)예정기간	모집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하며,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10조좌		
4. 펀드 존속 기간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1)}		
5. 분 류 ^{주2)}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6. 집 합 투 자 업 자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주)}		
모투자신탁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미래에셋자산운용(영국)
업무위탁범위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등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탁 모신탁	아시아 업종대표 증권모 (주식)	동유럽 업종대표 증권모 (주식)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모 (주식)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모 (주식)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모 (주식)	라틴아메리카 업종대표 증권모(주식)	중동아프리카 업종대표 증권모(주식)	KOREA 증권모 (주식)	ASEAN 업종대표 증권모 (주식)	파로스 증권모 (채권)	MENA 업종대표 증권모(주식)
Eastern 유리시아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20% 이상	20% 이상									
	90% 이상										
EasternEURICs 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20% 이상	20% 이상								
		90% 이상									
동유럽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BRICs 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90% 이상								
BRICs 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라틴아메리카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동유럽증동아프리카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20% 이상					20% 이상					제한없음
러시아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브라질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ASEAN 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20% 이상	20% 이상							
			90% 이상								

노블레스싱글글로벌이머징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10% 이하		
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 자 1 호(주식혼합)	60% 이하	60% 이하		
	90% 이상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5% 이상	이 투자신탁은 중국, 홍콩 및 인도 지역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대표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5% 이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대표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5% 이상	이 투자신탁은 러시아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대표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각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중국, 홍콩 및 인도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브라질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이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러시아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이익을 추구합니다.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①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각 15% 이상, 합하여 90% 이상 투자합니다.
-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 ③ 비교지수 : MSCI BRIC Index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친디아(중국+인디아)지역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비교지수 : MSCI Customized China + India Index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브라질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비교지수 : MSCI Brazil Index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러시아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비교지수 : MSCI Russia Index

* 업종대표 주식이란?

업종대표 주식이라 함은 GICS 분류에 따른 각 산업별 시장점유율 또는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 내지 2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 GICS 분류 기준이란?

GICS란 S&P사와 MSCI사가 1999년 개발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으로서 2008.12.31일 현재 10개 sector, 24개 industry group, 68개 industry, 154개 sub-industr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준하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 관리

모투자신탁	환위험 관리
-------	--------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중국 부분: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최고 100 % 수준을 목표로 하여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해당 통화의 환헤지 비용, 변동성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환헤지 비율은 변동 가능합니다. 인도 부분: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메니저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메니저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최고 100 % 수준을 목표로 하여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해당 통화의 환헤지 비용, 변동성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환헤지 비율은 변동 가능합니다.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래 위험들은 요약설명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 상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거래상대방이 신용위기 등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국가위험	신흥국가의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금송환 위험	해외 투자의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DR)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 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지역, 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u>소수</u> 종목 혹은 특정 지역(국가) 및 일부 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등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매매위험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등

기타위험은 투자자금 회수위험, 환매청구시 위험, 운용실무 위험, 규모변동 위험, 과세 위험, 투자신탁 해지위험, 잠재적 이해상충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등이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아래 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합니다.

위험등급 ^{주1)}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주1)
1	매우높은위험	-고위험자산 ^{주2)}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높은 위험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중간 위험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부동산실물(오피스빌딩 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낮은 위험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 적격 등급(BBB-이상)의 국내 채권 등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매우낮은위험	-MMF(단기금융용 집합투자기구) 혹은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위험등급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셔야 하며 위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의 설명을 위해서 요약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2) 고위험자산 : 주식, 후순위채, 투기등급(BB+ 이하) 채권, Commodity 파생상품, 상장부동산집합투자기구 (REITs),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09.04.01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송진용	1975	과장	61개	165,887 억	(03년~06년) 대신증권/대신투신운용 (0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자산배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개수: 해당사항없음 규모: 해당사항없음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팀운용(공동운용)으로 운용되며,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 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1) 연평균수익률(단위:%)

연도 (기간)	최근1년 '08.03.03~'09.03.02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이후 주2)
투자신탁전체 주1)	-55.06%	—	—	—	-45.3%
종류 A	-55.94%	—	—	—	-46.1%
종류 C	-56.34%	—	—	—	-46.45%
종류 C-e	-56.22%	—	—	—	-46.35%
비교지수주3)	-36.4%	—	—	—	-29.79%

주1)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2)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MSCI BRIC Index)

(2)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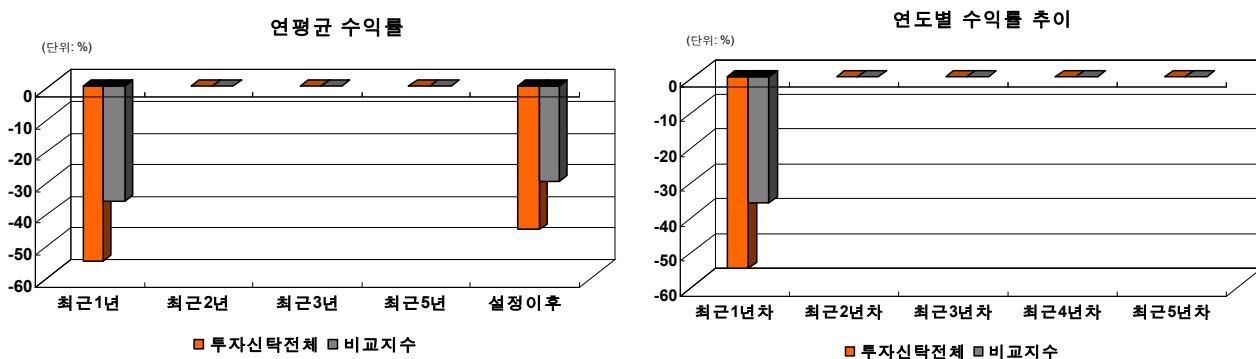
연도 기간주1)	최근1년차 '08.03.03~'09.03.02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투자신탁전체 주2)	-55.06%	—	—	—	—
종류 A	-55.94%	—	—	—	—
종류 C	-56.34%	—	—	—	—
종류 C-e	-56.22%	—	—	—	—
비교지수주3)	-36.4%	—	—	—	—

주1) 위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이며 종별로 운용기간이 표 상단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수익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2)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MSCI BRIC Index)



III 매입 ·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부과기준
	종류 A	종류 C	종류 C-2	종류 C-e	종류 직판 F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50 억 이상	온라인 가입자	집합투자기구 ^{주1)}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	—	—	—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分	순자산총액 기준 지급비율(연간,%)					비고 (지급시기)
	종류	종류 A	종류 C	종류 C-2	종류 C-e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9%	연 0.9%	연 0.9%	연 0.9%	연 0.9%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86%	연 1.70%	연 0.56%	연 1.45%	연 0.00%	매3개월 후급
신탁업자 보수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매3개월 후급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매3개월 후급
기타비용 ^{주1)}	연 0.13%	연 0.13%	연 0.13%	연 0.13%	연 0.11%	사유발생시
총보수 · 비용	연 1.98%	연 2.82%	연 1.68%	연 2.57%	연 1.1%	—
증권 거래비용	연 0.68%	연 0.69%	연 0.68%	연 0.68%	연 0.33%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2008.12.31 기준으로 최근 1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08.12.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99	715	1,156	2,378
종류 C	285	873	1,487	3,135
종류 C-2	171	529	912	1,981
종류 C-e	260	799	1,364	2,896
종류 직판F	112	349	605	1,335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펀드명	수수료				보수 (%)					
	선취	후취	전환	환매	운용	판매	수탁	사무	기타	총보수·비용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일 미만 10%	0.9	0.86	0.06	0.03	0.18	2.03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일 미만 70%	0.9	1.7	0.06	0.03	0.18	2.87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일 미만 70%	0.9	1.45	0.06	0.03	0.18	2.62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18	1.73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i)	-	-	-	90일 미만 70%	0.9	0.03	0.06	0.03	0.18	1.2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일 미만 70%	0.9	0	0.06	0.03	0.18	1.17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일 미만 10%	0.9	0.86	0.06	0.03	0.1	1.95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일 미만 70%	0.9	1.7	0.06	0.03	0.1	2.79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일 미만 70%	0.9	1.45	0.06	0.03	0.1	2.54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1	1.65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i)	-	-	-	90일 미만 70%	0.9	0.03	0.06	0.03	0.1	1.12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일 미만 70%	0.9	0	0.06	0.03	0.1	1.09
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일 미만 10%	0.9	0.86	0.06	0.03	0.12	1.97
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일 미만 70%	0.9	1.7	0.06	0.03	0.12	2.81
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일 미만 70%	0.9	1.45	0.06	0.03	0.12	2.56
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i)	-	-	-	90일 미만 70%	0.9	0.03	0.06	0.03	0.12	1.14
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일 미만 70%	0.9	0	0.06	0.03	0.08	1.07
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12	1.67
B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일 미만 10%	0.9	0.86	0.06	0.03	0.13	1.98
B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일 미만 70%	0.9	1.7	0.06	0.03	0.13	2.82
B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일 미만 70%	0.9	1.45	0.06	0.03	0.13	2.57
B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일 미만 70%	0.9	0	0.06	0.03	0.11	1.1
B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13	1.68
BRICs 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일 미만 10%	0.9	0.68	0.06	0.03	0.03	1.7
BRICs 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 1 호(주식) (C)	-	-	-	90일 미만 70%	0.9	1.36	0.06	0.03	0.04	2.39
라틴아메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일 미만 10%	0.9	0.68	0.06	0.03	0.14	1.81
라틴아메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일 미만 70%	0.9	1.36	0.06	0.03	0.14	2.49
라틴아메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일 미만 70%	0.9	1.16	0.06	0.03	0.14	2.29
라틴아메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14	1.69
라틴아메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일 미만 70%	0.9	0	0.06	0.03	0.14	1.13
동유럽중동아프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일 미만 10%	0.9	0.68	0.06	0.03	0.23	1.9
동유럽중동아프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일 미만 70%	0.9	1.36	0.06	0.03	0.23	2.58
동유럽중동아프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17	1.72
동유럽중동아프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일 미만 70%	0.9	1.16	0.06	0.03	0.22	2.37
동유럽중동아프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일 미만 70%	0.9	0	0.06	0.03	0.16	1.15
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일 미만 10%	0.9	0.86	0.06	0.03	0.07	1.92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 일 미만 70%	0.9	1.7	0.06	0.03	0.08	2.77
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 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07	1.62
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 일 미만 70%	0.9	1.45	0.06	0.03	0.07	2.51
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 일 미만 70%	0.9	0	0.06	0.03	0.07	1.06
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9	0.86	0.06	0.03	0.13	1.98
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 일 미만 70%	0.9	1.7	0.06	0.03	0.13	2.82
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 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13	1.68
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 일 미만 70%	0.9	1.45	0.06	0.03	0.13	2.57
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 일 미만 70%	0.9	0	0.06	0.03	0.06	1.05
ASEAN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9	0.68	0.06	0.03	0.58	2.25
ASEAN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 일 미만 70%	0.9	1.36	0.06	0.03	0.67	3.02
ASEAN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 일 미만 70%	0.9	1.16	0.06	0.03	0.54	2.69
ASEAN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 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6	2.15
ASEAN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 일 미만 70%	0.9	0	0.06	0.03	0.6	1.59
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9	0.86	0.06	0.03	0.06	1.91
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	-	-	-	90 일 미만 70%	0.9	1.7	0.06	0.03	0.06	2.75
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 일 미만 70%	0.9	1.45	0.06	0.03	0.06	2.5
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2)	-	-	-	90 일 미만 70%	0.9	0.56	0.06	0.03	0.06	1.61
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직판 F)	-	-	-	90 일 미만 70%	0.9	0	0.06	0.03	0.06	1.05
노블레스싱글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75	0.76	0.06	0.03	0.1	1.7
노블레스싱글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C)	-	-	-	90 일 미만 70%	0.75	1.44	0.06	0.03	0.07	2.35
노블레스싱글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 일 미만 70%	0.75	1.23	0.06	0.03	0.08	2.15
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75	0.76	0.06	0.03	0.06	1.66
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C)	-	-	-	90 일 미만 70%	0.75	1.44	0.06	0.03	0.03	2.31
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 일 미만 70%	0.75	1.23	0.06	0.03	0.05	2.12
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75	0.76	0.06	0.03	0.13	1.73
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C)	-	-	-	90 일 미만 70%	0.75	1.44	0.06	0.03	0.13	2.41
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C-e)	-	-	-	90 일 미만 70%	0.75	1.23	0.06	0.03	0.13	2.2
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직합) (A)	1%	-	-	30 일 미만 10%	0.7	0.9	0.06	0.03	0.03	1.72
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직합) (C)	-	-	-	90 일 미만 70%	0.7	1.63	0.06	0.03	0.02	2.44
부모님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직합) (C-e)	-	-	-	90 일 미만 70%	0.7	1.39	0.06	0.03	0.02	2.2

*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 납입금액 기준으로 1회 부과

* 환매수수료는 각 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1회 부과

* 각 펀드별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 기준가격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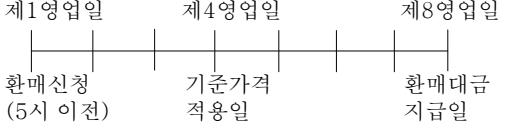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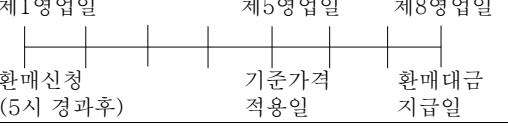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일 전날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간 판매보수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계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00:00~00:00) 중 판매회사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자금납입 (5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 제3영업일 자금납입 (5시 경과후)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 에 환매대금을 지급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8영업일 환매신청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 에 환매대금을 지급  제1영업일 제5영업일 제8영업일 환매신청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 목	2기 (08.12.31)	1기 (08.06.30)	-
운용자산	298,003	594,536	-
증권	297,622	594,399	-
파생상품	0	0	-
부동산/실물자산	0	0	-
현금 및 예치금	380	37	-
기타운용자산	0	100	-
기타자산	1,785	36,422	-
자산총계	299,789	630,959	-
운용부채	0	0	-
기타부채	2,269	4,181	-
부채총계	2,269	4,181	-
원본	746,769	719,962	-
수익조정금	-10,564	0	-
이익잉여금	-93,185	-93,185	-
자본총계	297,519	626,777	-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2기] (08.07.01~08.12.31)	1기] (07.07.01~08.06.30)	-
운용수익	-340,990	-58,255	-
이자수익	4	22	-
배당수익	0	32,489	-
매매/평가차익(손)	-341,000	-90,887	-
기타수익	5	120	-
운용비용	4,509	6,032	-
관련회사보수	4,300	5,938	-
매매수수료	9	8	-
기타비용	200	85	-
당기순이익	-345,500	-64,287	-
매매회전율 (%)	117	168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